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20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환경·보건관리 세항:(2211)보건·의약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2000 사회개발비		93,889,197	82,991,057	10,898,140	[국 38,215,807 시 17,846,932 양 365,000 구 37,461,458]
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		21,074,709	19,077,485	1,997,224	[국 668,063 시 1,374,410 양 0 구 19,032,236]
2210 환경·보건관리		21,074,709	19,077,485	1,997,224	[국 668,063 시 1,374,410 양 0 구 19,032,236]
2211 보건·의약관리		4,376,563	4,075,291	301,272	[국 628,363 시 497,280 양 0 구 3,250,920]
100 경상예산		2,700,307	2,445,773	254,534	[국 0 시 10,848 양 0 구 2,689,459]
110 인건비		1,569,233	1,434,636	134,597	[국 0 시 10,848 양 0 구 1,558,385]
	101 인건비	1,569,233	1,434,636	134,597	
		1,034,052	947,135	86,917	01 기본급 ○ 봉급 65,187 ㅇ 4급(23호봉) (경정)2,176,100 x 1명 x 12월 - (기정)24,753,000 = 1,361 ㅇ 5급(21호봉) (경정)1,901,000 x 1명 x 12월 - (기정)21,623,000 = 1,189 ㅇ 6급(26호봉) (경정)1,748,000 x 5명 x 12월 - (기정)101,568,000 = 3,312 ㅇ 7급(18호봉) (경정)1,396,000 x 17명 x 12월 - (기정)275,217,000 = 9,567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ㅇ 8급(10호봉) (경정)1,005,700 x 14명 x 12월 - (기정)129,624,000 = 39,334 ㅇ 9급(12호봉) (경정)966,300 x 2명 x 12월 - (기정)21,982,000 = 1,210 ㅇ 기능8급(11호봉) (경정)1,041,400 x 2명 x 12월 - (기정)23,691,000 = 1,303 ㅇ 기능9급(11호봉) (경정)934,600 x 6명 x 12월 - (기정)63,785,000 = 3,507 ㅇ 기능10급(12호봉) (경정)875,200 x 5명 x 12월 - (기정)48,108,000 = 4,404 ○ 상여금 21,730 ㅇ 기말수당 (경정)775,538,000 x 2/12 - (기정)118,392,000 = 10,865 ㅇ 정근수당 (경정)775,538,000 x 2/12 - (기정)118,392,000 = 10,865
		283,226	265,889	17,337	02 수당 ○ 초과근무수당 17,337 ㅇ 시간외근무수당 (경정)(6,138x25시간x49명x6월) + (6,138x32시간x49명x6월) - (기정)5,818 x 25시간 x 49명 x 12월 = 17,337
		151,460	138,007	13,453	03 기타직보수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					○ 전임계약직(연봉제)	12,210
					ㅇ 기본급	11,067
					· 나급 (경정)2,745,830 x 3명 x 12월 - (기정)87,783,000 =	11,067
					ㅇ 초과근무수당	1,143
					· 시간외근무수당 (경정)(6,221x3명x25시간x6월) + (6,221x3명x32시간x6월) - (기정)5,240,000 =	1,143
					○ 청원경찰	1,243
					ㅇ 기본급 (경정)1,106,700 x 1명 x 12월 - (기정)12,588,000 =	693
					ㅇ 상여금	232
					· 기말수당 (경정)13,281,000 x 2/12 - (기정)2,098,000 =	116
					· 정근수당 (경정)13,281,000 x 2/12 - (기정)2,098,000 =	116
					ㅇ 초과근무수당	300
					· 시간외근무수당 (경정)(5,219x1명x25시간x6월) + (5,219x1명x32시간x6월) - (기정)1,485,000 =	3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ㅇ 봉급조정수당 (경정)13,281,000 x 1/12 x 30% - (기정)315,000 = 18
		100,495	83,605	16,890	04 일용인부임
					○ 기본급 1,782
					ㅇ 청소원,방역기술원 (경정)24,240 x 2명 x 300일 - (기정)22,760 x 3명 x 300일 = △5,940
					ㅇ 시험사 25,740 x 1명 x 300일 = 7,722
					○ 상여금 (경정)22,266,000 x 4/12 - (기정)6,828,000 = 594
					○ 가산금(5년이상 계속근무자, 청소원) (경정)24,240 x 1명 x 300일 x 10% - (기정)683,000 = 45
					○ 초과근무수당 457
					ㅇ 시간외근무수당 148
					· 청소원,방역기술원 (경정)4,129 x 2명 x 150시간 - (기정)3,914 x 3명 x 150시간 = △522
					· 시험사 4,462 x 1명 x 150시간 = 670
					ㅇ 주휴수당 (경정)22,266,000 x 52/300일 - (기정)3,551,000 = 309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년월차수당 (경정)22,266,000 x 32/300일 - (기정)2,185,000 = 191
					○ 정액급식비 80,000 x 3명 x 12월 = 2,880
					○ 교통보조비 100,000 x 3명 x 12월 = 3,600
					○ 가계보조비 80,000 x 3명 x 12월 = 2,880
					○ 위생수당 30,000 x 3명 x 12월 = 1,080
					○ 가정간호사 3,381 (시) △3,584 (구) 6,965
					ㅇ 기본급 (경정)32,090 x 3명 x 300일 - (기정)27,504,000 = 1,377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4,667 - 8,251 = △3,584 (구) 24,214 - 19,253 = 4,961
					ㅇ 상여금 (경정)28,881,000 x 4/12 - (기정)9,168,000 = 459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2,750 - 2,750 = 0 (구) 6,877 - 6,418 = 459
					ㅇ 가산금 (경정)32,090 x 3명 x 300일 x 10% - (기정)1,834,000 = 1,055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550 - 550 = 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구) 2,339 - 1,284 = 1,055 o 초과근무수당 104 · 시간외근무수당 (경정)4,462 x 150시간 x 3명 - (기정)1,904,000 = 10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571 - 571 = 0 (구) 1,437 - 1,333 = 104 o 주휴수당 (경정)28,881,000 x 52/300일 - (기정)4,768,000 = 239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,430 - 1,430 = 0 (구) 3,577 - 3,338 = 239 o 년월차수당 (경정)28,881,000 x 32/300일 - (기정)2,934,000 = 14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880 - 880 = 0 (구) 2,201 - 2,054 = 147
120 경상적경비		1,131,074	1,011,137	119,937	
	201 일반운영비	59,940	66,599	△6,659	
		59,940	66,599	△6,659	01 일반운영비 ○ 예산절감 (경정)66,599,000 x 90% - (기정)66,599,000 = △6,659
	202 여비	43,731	48,590	△4,859	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		43,731	48,590	△4,859	01 국내여비	
					○ 예산절감	
					(경정)48,590,000 x 90% - (기정)48,590,000 =	△4,859
	203 업무추진비	138,480	124,620	13,860		
		127,860	114,000	13,860	04 기타업무추진비	
					○ 직급보조비	13,860
					ㅇ 4급	
					(경정)400,000 x 1명 x 12월 - (기정)300,000 x 1명 x 12월 =	1,200
					ㅇ 5급,전임계약직(나급)	
					(경정)250,000 x 4명 x 12월 - (기정)200,000 x 4명 x 12월 =	2,400
					ㅇ 6급	
					(경정)155,000 x 5명 x 12월 - (기정)130,000 x 5명 x 12월 =	1,500
					ㅇ 7급	
					(경정)140,000 x 17명 x 12월 - (기정)120,000 x 17명 x 12월 =	4,080
					ㅇ 8,9급 기능8,9급 청원경찰	
					(경정)105,000 x 21명 x 12월 - (기정)90,000 x 21명 x 12월 =	3,780
					ㅇ 기능10급	
					(경정)95,000 x 5명 x 12월 - (기정)80,000 x 5명 x 12월 =	9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	204 복리후생비	461,164	380,145	81,019	○ 정액급식비	
					(경정)90,000 x 53명 x 12월 - (기정)80,000 x 53명 x 12월 =	6,360
					○ 교통보조비	18,000
					ㅇ 4급,5급	
					(경정)140,000 x 2명 x 12월 - (기정)100,000 x 2명 x 12월 =	960
					ㅇ 6급,7급	
					(경정)130,000 x 22명 x 12월 - (기정)100,000 x 22명 x 12월 =	7,920
					ㅇ 8급,9급,기능10급	
					(경정)120,000 x 27명 x 12월 - (기정)30,000,000 =	8,880
					ㅇ 청원경찰	
					(경정)120,000 x 1명 x 12월 - (기정)100,000 x 1명 x 12월 =	240
					○ 명절휴가비	38,359
					ㅇ 정규직	
					(경정)775,538,000 x 1/12 x 150% - (기정)59,196,000 =	37,747
					ㅇ 청원경찰	
					(경정)13,281,000 x 1/12 x 150% - (기정)1,049,000 =	612
					○ 가계지원비	13,725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					ㅇ 정규직 (경정)775,538,000 x 1/12 x 250% - (기정)147,990,000	
					=	13,581
					ㅇ 청원경찰 (경정)13,281,000 x 1/12 x 250% - (기정)2,623,000	
					=	144
					○ 연가보상비	4,575
					ㅇ 정규직 (경정)775,538,000 x 1/12 x 1/24 x 20일 - (기정)49,330,000	
					=	4,527
					ㅇ 청원경찰 (경정)13,281,000 x 1/12 x 1/24 x 20일 - (기정)875,000	
					=	48
	206 재료비	83,430	74,469	8,961		
		59,460	50,499	8,961	01 재료비	
					○ 유류대	8,961
					ㅇ 경유 (경정)625 x 380ℓx 150일 x 90% -	
					(기정)625 x 380ℓx 100일 =	8,313
					ㅇ 휘발유 (경정)1,234 x 15ℓx 150일 x 90% -	
					(기정)1,234 x 15ℓx 100일 =	648
	301 일반보상금	8,948	8,648	300		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8,548	8,248	300	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교통비 (경정)1,400 x 5명 x 25일 x 12월 - (기정)1,200 x 5명 x 25일 x 12월 = 300
	307 민간이전	334,981	307,666	27,315	
		334,981	307,666	27,315	01 의료및구료비 ○ 인플루엔자 58,500 ㅇ 유료 (경정)4,500 x 28,000명 - (기정)67,500,000 = 58,500 ○ 전염병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△1,000 ㅇ 주사기 (경정)100 x 10,000개 - (기정)2,000,000 = △1,000 ○ 환자약품 제용지 △2,025 ㅇ 약포지 (경정)45,000 x 50롤 x 90% - (기정)4,050,000 = △2,025 ○ 간염검사 시약 (경정)1,400 x 300명 x 12월 - (기정)10,080,000 = △5,040 ○ 혈구계수기 시약 (경정)1,000 x 300명 x 12월 - (기정)6,000,000 = △2,400 ○ 한방무료이동진료약품 구입 (경정)1,300 x 400명 x 12월 - (기정)12,480,000 = △6,24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한방진료약품 구입 (경정)1,300 x 900명 x 12월 - (기정)26,520,000 = △12,480 ○ 치과치료 물품 구입 (경정)7,000,000 - (기정)9,000,000 = △2,000
200 사업예산		1,676,256	1,629,518	46,738	[국 628,363 시 486,432 양 0 구 561,461]
210 보조사업		1,483,658	1,436,920	46,738	[국 628,363 시 486,432 양 0 구 368,863]
	201 일반운영비	59,741	73,740	△13,999	
		59,741	73,740	△13,999	01 일반운영비 ○ 성교육 교관 훈련비 (경정)760,000 - (기정)190,000 = 57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28 - 57 = 171 (구) 532 - 133 = 399 ○ 방문간호사 교육비 (경정)1,654,000 - (기정)1,437,000 = 21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826 - 718 = 108 (구) 828 - 719 = 109 ○ 치매상담센터 운영 (경정)4,400,000 - (기정)5,000,000 = △6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,200 - 2,500 = △300 (시) 2,200 - 2,500 = △3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고혈압,당뇨관리사업 운영 (경정)5,714,000 - (기정)5,016,000 = 69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,857 - 2,508 = 349 (시) 1,429 - 1,254 = 175 (구) 1,428 - 1,254 = 174 ○ 저소득층 암조기검진 사업 (경정)11,836,000 - (기정)7,208,000 = 4,62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5,918 - 3,604 = 2,314 (시) 2,959 - 1,802 = 1,157 (구) 2,959 - 1,802 = 1,157 ○ 의료보호대상 암조기검진 (경정)3,728,000 - (기정)1,308,000 = 2,4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864 - 654 = 1,210 (시) 932 - 327 = 605 (구) 932 - 327 = 605 ○ 모자보건선도사업 운영 (경정)11,470,000 - (기정)24,720,000 = △13,25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5,735 - 12,360 = △6,625 (시) 2,867 - 6,180 = △3,313 (구) 2,868 - 6,180 = △3,312 ○ 모자보건선도사업 소규모용역 (경정)0 - (기정)2,000,000 = △2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0 - 1,000 = △1,000 (시) 0 - 500 = △500 (구) 0 - 500 = △500 ○ 금연사업 (경정)3,800,000 - (기정)3,000,000 = 8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900 - 1,500 = 400 (구) 1,900 - 1,500 = 400 ○ 구강보건 교육자료 구입 (경정)0 - (기정)1,000,000 = △1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0 - 1,000 = △1,000 ○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 (경정)2,086,000 - (기정)2,588,000 = △502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,043 - 1,294 = △251 (구) 1,043 - 1,294 = △251 ○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(경정)0 - (기정)6,700,000 = △6,7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2,010 = △2,010 (시) 0 - 2,345 = △2,345 (구) 0 - 2,345 = △2,345 ○ 모자보건수첩 제작 (경정)2,720,000 - (기정)2,000,000 = 7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2,720 - 2,000 = 72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202 여비	16,907	18,018	△1,111	
		16,907	18,018	△1,111	01 국내여비

○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추진여비 = 500
(국) 250
(시) 125
(구) 125

○ 모자보건선도사업 추진 여비
(경정)2,100,000 - (기정)3,480,000 = △1,380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국)	1,050	-	1,740	=	△690
(시)	525	-	870	=	△345
(구)	525	-	870	=	△345

○ 결핵환자 발견사업 여비
(경정)500,000 - (기정)480,000 = 20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시)	500	-	480	=	20

○ 노인관련시설사업 추진여비
(경정)560,000 - (기정)560,000 = 0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시)	280	-	560	=	△280
(구)	280	-	0	=	280

○ 에이즈관리 업무추진여비
(경정)847,000 - (기정)948,000 = △101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국)	847	-	948	=	△101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방역요원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(경정)300,000 - (기정)450,000 = △15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00 - 450 = △150
	206 재료비	37,200	35,700	1,500	
		1,500	0	1,500	02 일시사역인부임 ○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사업 1,500 (국) 750 (시) 375 (구) 375 o 전산입력 인부 인건비 25,000 x 3명 x 20일 = 1,500 (국) 750 (시) 375 (구) 375
	207 연구개발비	5,000	0	5,000	
		5,000	0	5,000	01 학술용역비 ○ 모자보건선도사업 = 5,000 (국) 2,500 (시) 1,250 (구) 1,250
	301 일반보상금	5,680	1,800	3,880	
		5,680	1,800	3,880	09 행사실비보상금 ○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등 = 1,2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국) 600 (구) 600 ○ 치매상담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= 600 (국) 300 (시) 300 ○ 모자보건선도사업 (경정)3,880,000 - (기정)1,800,000 = 2,08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940 - 900 = 1,040 (시) 970 - 450 = 520 (구) 970 - 450 = 520
	307 민간이전	1,339,580	1,307,662	31,918	
		938,483	940,919	△2,436	01 의료및구료비 ○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(경정)1,400,000 - (기정)2,598,000 = △1,19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700 - 1,299 = △599 (시) 350 - 650 = △300 (구) 350 - 649 = △299 ○ 노인관련시설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(경정)12,813,000 - (기정)11,940,000 = 87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6,407 - 11,940 = △5,533 (구) 6,406 - 0 = 6,406 ○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(경정)1,340,000 - (기정)1,100,000 = 24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,340 - 1,100 = 240 ○ 암환자유소견자 2차검진비 및 진찰료 (경정)0 - (기정)6,420,000 = △6,4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0 - 3,210 = △3,210 (구) 0 - 3,210 = △3,210 ○ 임산부, 영유아 검진 (경정)788,000 - (기정)900,000 = △112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16 - 360 = △44 (시) 236 - 270 = △34 (구) 236 - 270 = △34 ○ 기초예방접종사업 1 (시) 1 ㅇ 피디티 (경정)29,417,000 - (기정)29,416,000 = 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4,708 - 14,708 = 0 (시) 7,355 - 7,354 = 1 (구) 7,354 - 7,354 = 0 ○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(경정)26,000,000 - (기정)13,813,000 = 12,18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0,400 - 5,525 = 4,875 (시) 7,800 - 4,144 = 3,656 (구) 7,800 - 4,144 = 3,656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(경정)636,800,000 - (기정)653,188,000 = △16,38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18,400 - 326,594 = △8,194 (시) 159,200 - 163,297 = △4,097 (구) 159,200 - 163,297 = △4,097 ○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△1,943 (국) △970 (시) △485 (구) △488 ㅇ 장티푸스 (경정)1,702,000 - (기정)1,899,000 = △19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851 - 949 = △98 (시) 426 - 475 = △49 (구) 425 - 475 = △50 ㅇ 일본뇌염 (경정)10,954,000 - (기정)10,941,000 = 1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5,477 - 5,471 = 6 (시) 2,739 - 2,735 = 4 (구) 2,738 - 2,735 = 3 ㅇ 신증후군출혈열 (경정)412,000 - (기정)491,000 = △79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06 - 244 = △38 (시) 103 - 123 = △20 (구) 103 - 124 = △21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
ㅇ 인플루엔자
(경정)8,188,000 - (기정)9,868,000 = △1,680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국)	4,094	-	4,934	=	△840
(시)	2,047	-	2,467	=	△420
(구)	2,047	-	2,467	=	△420

○ 노인의치 보철사업(전부의치)
(경정)31,200,000 - (기정)9,600,000 = 21,600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국)	15,600	-	4,800	=	10,800
(시)	7,800	-	2,400	=	5,400
(구)	7,800	-	2,400	=	5,400

○ 노인의치 보철사업(부분의치)
(경정)22,800,000 - (기정)19,840,000 = 2,960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국)	11,400	-	9,920	=	1,480
(시)	5,700	-	4,960	=	740
(구)	5,700	-	4,960	=	740

○ 치아홈메우기
(경정)2,480,000 - (기정)1,516,000 = 964

	[경 정]		[기 정]		[증 감]
(국)	1,240	-	758	=	482
(시)	620	-	379	=	241
(구)	620	-	379	=	241

○ 저소득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
(경정)15,000,000 - (기정)30,000,000 = △15,000

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국) 7,500 - 15,000 = △7,500 (시) 3,750 - 7,500 = △3,750 (구) 3,750 - 7,500 = △3,750 ○ 진단시약 구입 (경정)3,000,000 - (기정)3,200,000 = △2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500 - 1,600 = △100 (시) 1,500 - 1,600 = △100
		185,541	160,554	24,987	02 민간경상보조 ○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(경정)80,611,000 - (기정)55,854,000 = 24,75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56,428 - 39,098 = 17,330 (시) 24,183 - 16,756 = 7,427 ○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 (경정)2,780,000 - (기정)2,550,000 = 23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390 - 1,275 = 115 (시) 1,390 - 1,275 = 115
		215,556	206,189	9,367	05 민간위탁금 ○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사업 (경정)91,138,000 - (기정)100,212,000 = △9,07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5,569 - 50,106 = △4,537 (시) 22,784 - 25,053 = △2,269 (구) 22,785 - 25,053 = △2,268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의료보호대상 암조기검진 사업 (경정)56,632,000 - (기정)56,004,000 = 62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8,316 - 28,002 = 314 (시) 14,158 - 14,001 = 157 (구) 14,158 - 14,001 = 157 ○ 암환자유소견자 2차검진비 및 진찰료 = 6,420 (시) 3,210 (구) 3,210 ○ 치아홈메우기 사업 (경정)14,800,000 - (기정)12,724,000 = 2,076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7,400 - 6,362 = 1,038 (시) 3,700 - 3,181 = 519 (구) 3,700 - 3,181 = 519 ○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감시사업 (경정)15,166,000 - (기정)5,849,000 = 9,31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7,583 - 2,924 = 4,659 (시) 3,792 - 1,463 = 2,329 (구) 3,791 - 1,462 = 2,329
	405 자산취득비	19,550	0	19,550	
		19,550	0	19,55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모자보건선도사업 1,550 (국) 775 (시) 388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
					(구)		387
					ㅇ 컴퓨터 구입	=	1,100
						(국)	550
						(시)	275
						(구)	275
					ㅇ 프린터 구입	450,000 x 1대 =	450
						(국)	225
						(시)	113
						(구)	112
					○ 노인관련시설사업		18,000
						(시)	9,000
						(구)	9,000
					ㅇ 동맥경화진단기 구입	=	12,000
						(시)	6,000
						(구)	6,000
					ㅇ 홍채진단기 구입	=	6,000
						(시)	3,000
						(구)	3,000